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1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남인순 · 송옥주
서미화 · 조계원 · 백혜련
전종덕 · 김문수 · 이원택
이건태 · 전진숙 · 복기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,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.7%, 2021년 64.6%, 2022년 65%, 2023년 65.3%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.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움.

이에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 · 직급 · 직무 · 근속연수 ·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,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

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(안 제46조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중 “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 평가 결과,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
2. 결산서 및 재무제표
3.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(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)
4. 임원 및 운영인력의 성별 현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
 - 나.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별 임금 현황
 - 다. 성별 승진 관련 현황(성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다)
 - 라.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
5. 경영평가 결과,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
6. 내·외부 감사결과

7. 「감사원법」 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지방직영기업의 조치 사항
 8.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이 경우 통합공시에는 제2항제4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업무 상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(제75조의2 및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업무 상황의 공표 등) ① (생략) ② 관리자는 <u>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 평가 결과,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46조(업무 상황의 공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</u> ----- ----- -----. <u>1.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</u> <u>2. 결산서 및 재무제표</u> <u>3.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(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)</u> <u>4. 임원 및 운영인력의 성별 현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/u> <u>가.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</u> <u>나. 직종·직급·직무·근속연수·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별 임금 현황</u> <u>다. 성별 승진 관련 현황(성</u>

